

제4장 특수대학원 장학금(신설 2012. 02. 01)

제40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 특수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2. 봉사장학금
3. 직계장학금
4. 부속기관장학금
5. (삭제 2017. 03. 24)
6. 위탁성장학금
7. (삭제 2017. 03. 24)
8. 외국인장학금 (개정 2017. 03. 24)
9. 기금장학금
10. 특성화장학금 (개정 2017. 03. 24)
11. (삭제 2017. 03. 24)
12. 복지장학금 (신설 2017. 03. 24)
13. 공개강좌장학금 (신설 2017. 03. 24)

제41조(성적우수장학금) ① 입학성적, 재학기간 중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세부명칭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02. 03)

구분	세부명칭	지급액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전체수석)	수업료 60%
	입학성적우수(학과/전공수석)	수업료 40%
	입학성적우수	수업료 20%
재학생	성적우수(전체수석)	수업료 50%
	성적우수(학과/전공수석)	수업료 30%
	성적우수	수업료 20%

③ 재학생적우수자는 직전학기 6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5이상 이 되어야 하며, 평균평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신설 2017. 02. 03)

④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7. 02. 03)

구분	동점자처리기준
신입생	1. 면접전형 성적 우수자 2. 그 외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재학생	1. 총점(취득 교과목의 취득점수 곱하기 학점수의 총합) 2. 신청과목 수 3. 그 외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봉사장학금) 특수대학원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02. 03)

지급기준	지급액
원우회장	수업료 80% 이내
원우회 임원	수업료 30% 이내
원우회 학과(전공)대표	
원우회 사무국장	

제43조(직계장학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차 학기 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4.5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 02. 26)

1.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2. 본 대학교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3. 본 대학교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순직, 공상으로 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②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액: 수업료(입학금 제외)(개정 2019. 01. 15)

대상	본인	직계자녀	배우자
지급액	수업료 전액	수업료 50%	수업료 50%

2.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

(본조 전문 개정 2017. 06. 21)

제44조(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중앙대학교 제외)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본인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2. 배우자 및 직계자녀 : 수업료 25%(입학금 제외)
3.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재직 시에 한함)
4. 제출서류

- 가. 재직증명서
-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조 전문 개정 2017. 03. 24)

제45조(공공기관장학금) (삭제 2017. 03. 24)

제46조(위탁생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위탁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03. 24)

제47조(교사 및 교육공무원장학금) (삭제 2017. 03. 24)

제48조(외국인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03. 24)

제49조(기금장학금) ①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하여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 03. 24)

제50조(특성화장학금) ① 특수대학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종업계 재직자
2. 교내·외 공모전 및 학술제 참가자
3. 교류협력에 의하여 입학한 자
4. 국내·외 연수 참가자
② 각 호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장학금 선발 및 지급은 [별표3]에 따라 각 대학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 03. 24)

제50의2조(복지장학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장애자로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②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지급액은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 03. 24)

제50의3조(공개강좌장학금) 특수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공개강좌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적용
경력우대	1. 산업체 장기경력자 2. 신입생의 경우 서류전형 80점 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수료 시 까지
봉사	공개강좌 원우회 임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당해학기
문예창작	문예지 수상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당해학기

(본조 신설 2017. 03. 24)